

# 부천시 시민의강운영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0월 12일 전덕생 의원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10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 10월 1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전 덕 생 의원)

### □ 제정이유

- 부천시 원미구 상동 신시가지내에 2003. 9. 30일 조성 완료된 시민의강 시설물은 북부생태공원 재이용수(중수도)를 상동 신시가지내 수로를 따라 흘러 삭막한 아파트 밀집지역의 콘크리트 숲 사이에서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중수도 홍보용 인공하천인 「시민의 강」은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물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친환경적으로 인공하천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나,
- 시민의 강 시설물 공용 개시후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시민의 강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관리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안 제4조)
- 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관리 직원 및 수탁자는 시민의 강 시설의 보호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안 제5조)

-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수 있도록 함.(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규정) ( 안 제7조)
- 시민의 강 유지용수를 중수도 수질 기준에 적합한 용수로 공급 하여야 하며, 수질기준을 초과로 인한 수중 생태에 악영향이 없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안 제10조)
- 수초류의 번식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토양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식생에 부적합한 토양은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고, 동절기간중 수초류의 뿌리가 동상을 입지 않도록 보온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함.(안 제11조)
- 어류, 어패류 성장 및 번식에 장애가 없도록 양호한 수중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수중생태 어종의 개체수 등 환경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 관리 하도록 함.(안 제12조)
- 시민의 강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은 매년 상, 하반기 2회 실시하며, 수시점검은 수질의 악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및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하며, 정기, 수시점검 결과는 기록 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
- 시민의 강의 시민 참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1. 시민의 강에 유입된 오물 등의 제거 및 청소활동
  2. 수질오염 발생 신고
  3. 수초류의 고사 및 어류, 어패류의 폐사 발생신고
  4. 수초류 및 어류, 어패류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5. 비상 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6. 시민의 강과 중수도의 홍보활동
- 시민의 강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시민의강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시민의 강이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족 하다고 판단 될 경우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고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 실태 및 자연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담아 기록 관리 하도록 함.(안 제22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도시공원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3조)

### 3.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중수도의 재이용수를 이용한 시민의 강에만 국한적 적용받는 조례인지 ?	○ 시민의 강이 모두 조성된 것은 아님. 어린이 공원은 시민의 강이 아니고 상동 호수공원도 관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점차 자연 하천과 연결시켜 자연수와도 이어 질것으로 봄.
○ 시 집행부도 많은 부서가 관련되고 효율적 체계적 관리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입법 취지임. 환경, 시민단체들도 참여시킬 것인지 ?	○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임. 상1, 2, 3동 지역의 사회단체, 국민운동단체, 자생단체등도 포함시키는 등 광범위한 시민 참여가 있었으면 함.
○ 조례 제6조의 사무의 민간위탁 내용이 조문에 있어 시민의 강 관리업무에 대해 차후 위탁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	○ 조례 그대로 해석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리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것이고 조례에 보면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 세부적인 추진안이 마련될 것으로 봄.
○ 중수도를 이용한 생산원가와 향후 광범위한 활용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	○ 중수도 생산원가는 현재 약 84원으로 알고 있음. 중수도를 생산하여 상동 신시가지의 업무시설 및 삼정동 레미콘 공장등 제공하고자 할것임.
○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위탁조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 설명하는 것인지 ?	○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 운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임.
○ 상동 호수공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	○ 시민의 강 뿐만 아니라 중수도를 이용한 호소에 적용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본 조례안에서도 시민참여 내용이 삽입되어 있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수정 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제301호
의결 년월일	2004.10.22 (제115회)

제안년월일 : 2004. 10. 19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 1. 수정이유

○동 조례에서 민간위탁조항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나

○우리 시에는 중수도의 재이용수를 활용한 시민의강뿐만 아니라 베르네천, 구지천, 역곡천 등 많은 하천이 있어 시민의강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민홍보용 하천으로 조성된 취지에 걸맞는 우선적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관리 운영되어야 함.

## 2. 주요골자

○시민의강 관리방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안 제4조)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직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

○수탁자의 의무를 관리자의 의무로 수정한다.

○시민의강 수질기준은 이미 용역보고서에 기준이 있어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조)

#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 안 제5조중 “관리직원 및 수탁자는”을 “관리직원은”으로 한다.
- 안 제6조, 제7조,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제6조로 하며,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24조를 제8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 종전 안 제8조중 “수탁자의 의무”를 “관리자의 의무”로 한다.
- 종전 안 제10조제6항중 “유지용수를 살수용수 수질기준”을 “수질기준”으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수초류관리) (생략)	제8조(수초류관리)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어류, 어패류, 조류관리) (생략)	제9조(어류, 어패류, 조류관리)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점검) (생략)	제10조(점검)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시민참여등) (생략)	제11조(시민참여등) (제정안과 같음)
제15조(금지행위) (생략)	제12조(금지행위) (생략)
제16조(시민의강관리위원회의 설치및기능) (생략)	제13조(시민의강관리위원회의설치및기능) (제정안과 같음)
제17조(구성) (생략)	제14조(구성) (제정안과 같음)
제18조(위원의 임기) (생략)	제15조(위원의 임기) (제정안과 같음)
제19조(위원장등의 직무) (생략)	제1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정안과 같음)
제20조(회의) (생략)	제17조(회의) (제정안과 같음)
제21조(위원의 수당) (생략)	제18조(위원의 수당) (제정안과 같음)
제22조(홍보및자료의 관리) (생략)	제19조(홍보및자료의 관리) (제정안과 같음)
제23조(준용) (생략)	제20조(준용) (제정안과 같음)
제24조(시행규칙) (생략)	제21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수정안 포함]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시민의강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동 신시가지내에 중수도를 이용하여 조성된 시민의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민의강 및 중수도 활용 하천, 호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의강”이라 함은 중수도를 이용하여 발원지점 으로부터 자연 유하된 용수가 수로를 따라 흘러 퇴수되는 지점까지의 수로시설과 어린이공원 일원에 조성된 하천을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시민의강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관리방법)**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강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관리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의 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관리직원은 시민의강 시설의 보호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의 보호관리 및 유지관리 전반
2. 시설 구역안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강구 및 감시활동
3. 자연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수질정화 및 수초류, 어류, 어패류, 조류의 보호 활동
4. 시민의강 홍보활동 및 필요사업
5. 시민 의견수렴 및 교육활동
6. 시장 및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업

**제7조(수질관리)** ①시장은 시민의강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로 공급하여야 하며, 수질기준의 초과로 인한 수중 생태에 악영향이 없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시설물 관리자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질 등이 유입되어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초래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입수질은 수시 점검하여 공개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초류 관리)** ①시장은 수초류의 번식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토양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식생에 부적합한 토양은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②동절기에는 수초류의 뿌리가 동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어류, 어패류, 조류 관리)** ①시장은 어류, 어패류, 조류 성장 및 번식에 장애가 없도록 양호한 수중 생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어류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②수중 생태 어류, 어패류, 조류, 수생식물의 개체수 등 변화과정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①시장은 시민의강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기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실시한다.

③수시점검은 수질의 악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및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④정기, 수시점검 결과는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참여 등)** ①시장은 시민의강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시민의강에 유입된 오물 등의 제거 및 청소활동

2. 수질오염 발생 신고

3. 수초류의 고사 및 어류, 어패류의 폐사 발생신고

4. 수초류 및 어류, 어패류, 조류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제12조(금지 행위)** ①시민의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민의강 주변에서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점용이나 노점을 하는 행위
2. 시민의강에서 시장의 허가없이 어류, 어패류, 조류를 잡거나 방생하는 행위
3. 수초류를 채집, 채취하는 행위
4.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5. 무단 방뇨 행위

**제13조 (시민의강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민의강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 시민의강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시민의강 보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민의강 기록 보전 추진과제 발굴
3. 시민의강 양적,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5. 기타 시민의강 보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상·하수도, 녹지공원·조경, 수질, 생태계 변화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부천시의회의원, 부천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민의강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9조 (홍보 및 자료의 관리)** ①시장은 시민의강이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의강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 실태 및 자연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담아 지속적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도시공원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